



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
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

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 【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】
 참 조 시설관리 담당
 제 목 산업단지 내 매립완료 된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녹지 外 타 용도
 이용가능 정부 답변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지난 7월 매립협회 정례회의 시 질의기로 한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133호) 제14조 제1호에 따른 “산업단지 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사용 제한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“산업단지 내 매립 완료된 부지 사용제한” 관련 답변

○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만 산업단지의 최소 녹지 확보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, 녹지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님. 결국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

붙 임 : 「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」 1부. 끝.

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장



협 조	팀 장	한인성	사무국장	장기석	상근부회장	진원기	회 장	이민석
시 행	한매협 2016 - 48호		(2016. 8. 10)		접수			
우	157-754	서울특별시	강서구	강서로 466, 11층(등촌동, 우리벤처타운)	/		www.kiwrma.or.kr	
전 화	02-718-7900	전 송		02-718-7171	/		kiwrma@kiwrma.or.kr / 비공개	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귀하(우07573,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, 11층(등촌동, 우리벤처타운))

(경유)

제목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
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산업단지 내 매립완료 된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사용 제한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.

○ 질의요지

산업단지 내에 조성되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4조에 따라 녹지로만 사용토록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

○ 회신내용

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(이하 통합지침)제14조제1호에서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에서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(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,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)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(史蹟)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통합지침제14조제1호마목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지면적을 산업단지의 최소 녹지확보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일 뿐,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

사무관대우 유용일 시설사무관 박기범 기술서기관 대결 2016. 8. 2. 과장 전결

협조자 김은영

시행

산업입지정책과-2784 (2016. 8. 2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676 팩스번호 044-201-5564 / pargo76@molit.go.kr / 비공개(5)

정부3.0,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.